



**의안번호**

**제40호**

**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<b>발 의 자</b>	<b>김남총 의원 외 11명</b>
<b>발의연월일</b>	<b>2020. 4. 1.</b>

#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0호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4. 1.  
대표발의자 : 김남충  
공동발의자 : 김진호 박승용  
조배식 김만중  
구본선 이계천  
박영자 서 원  
조용훈 최정숙  
차경선

## 1. 제안이유

○ 「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, 근로자 권리 보호 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「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근로자의 정의(안 제2조)

-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따른 근로자의 정의 내용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
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-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타사항 : 조례안 참조

- 입법예고 : 2020. 4. 1. ~ 2020. 4. 5.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# 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근로자”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「근로기준법」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 관 부 서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김남충 의원 외 11명

## □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근로자”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근로자”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「근로기준법」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.</p>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**

○ 해당사항 없음

**2. 비용추계결과****가. 추계의 전제**

○ 해당사항 없음

**나. 추계결과**

○ 해당사항 없음

**□ 「지방자치법」**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**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**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